

졸업인증제 시행 지침

1. 목적

학칙시행세칙 제34조 의3(졸업인증제)에 관한 세부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2. 적용 대상자 : 2001학년도 이후 신입학생 및 2003학년도 이후 편입학생

3. 면제자

가. 학사 편입학생

나. 외국인 학생

다. 북한귀순동포, 계약학과 입학생, 학군제휴 군위탁생

라. 기타 졸업인증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자

4. 인증 자격

재학기간 중 다음의 졸업인증 취득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“졸업인증”자격을 부여한다.

5. 졸업인증 취득요건

가. 기준점수

학부(과)	대상 학년도	TOEIC	TOEIC Speaking	TOEFL		TEPS	OPIc
				PBT	IBT		
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경영학과	2001학년도 ~ 2011학년도 신입생 2003학년도 ~ 2013학년도 편입생	600	Level 5 이상 (120점)	500	61	480	IL 이상
	2012학년도 이후 신입생 2014학년도 이후 편입생	700	Level 6 이상 (130점)	520	68	600	IM 이상
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	2001학년도 이후 신입생 2003학년도 이후 편입생	600	Level 5 이상 (120점)	500	61	480	IL 이상
항공재료 공학과	2001학년도 ~ 2011학년도 신입생 2003학년도 ~ 2013학년도 편입생	600	Level 5 이상 (120점)	500	61	480	IL 이상
	2012학년도 이후 신입생 2014학년도 이후 편입생	650	Level 5 이상 (120점)	510	64	526	IL 이상
항공운항학과	2001학년도 ~ 2010학년도 신입생	600	Level 5 이상 (120점)	500	61	480	IL 이상
	2011학년도 이후 신입생	800	Level 6 이상 (140점)	570	88	700	IM (Mid3) 이상
	기 타 : EPTA 4급이상						
항공교통 물류 학부 항공교통물류 우주법학부 영어학과	2001학년도 ~ 2004학년도 신입생 2003학년도 ~ 2006학년도 편입생	600	Level 5 이상 (120점)	500	61	480	IL 이상
	2005학년도 ~ 2011학년도 신입생 2007학년도 ~ 2013학년도 편입생	700	Level 6 이상 (130점)	520	68	600	IM 이상
	2012학년도 이후 신입생 2014학년도 이후 편입생	800	Level 6 이상 (140점)	570	88	700	IM (Mid3) 이상
항공우주 법 학 과	2001학년도 ~ 2008학년도 신입생 2003학년도 ~ 2010학년도 편입생	600	Level 5 이상 (120점)	500	61	480	IL 이상

※ 본교에서 주관하는 모의 TOEIC포함 ※2년이내의 유효한 성적만 인정함.

나. 삭제

다. 졸업인증제 대체 인증

(1) 대상학번 : 2001 ~ 2004학년도 신입학생, 2003~2006학년도 편입학생

(가) 본 대학교 영어분야 졸업인증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에서 B+ 이상 취득한 자[별표2]

(나) 위의 해당분야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본 대학교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졸업인증 시험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한다.

6. 인증절차

가.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, 영어학력평가(교무팀 주관 모의토익)성적표와 졸업인증제 신청서를 교무팀에 제출한다

나. 졸업인증에 관련된 서류는 해당 학생의 졸업 후 4년까지 보관 한다.

다. 졸업인증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에 대한 기록은 따로 보관 한다.

7. 졸업인증제 심의

가. 심의 위원회 : 교육과정혁신위원회

나. 주요안건

- 1) 졸업 인증 자격 심의
- 2) 대체 인정 과목 심의
- 3) 졸업인증 시험 심의
- 4) 기타 졸업인증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

다. 구성 : 교무처장, 각 단과대학장 및 학부(과)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5명내외의 임명직으로 구성한다.

라. 의결 방법 :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[부 칙]

1. (시행일) 본 지침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본 지침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"졸업인증에 관한 규정"을 대체하여 제정한다.
3. (시행일) 본 지침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①(시행일) 본 지침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(졸업인증제 심의위원회 폐지) 졸업인증제 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2011년 9월 1일부터 교육과정혁신위원회에서 졸업인증제를 심의한다.
③(경과조치) 졸업인증제 컴퓨터분야는 2012학년도 후기(2013년 3월 재적생 해당) 졸업대상자부터 폐지한다.
5. (시행일) 본 지침은 2014. 5. 0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삭제

[별표2]졸업인증과목 및 대체인정과목(홈페이지 학사안내참조)

[별표3]삭제